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김종혁 소유물건(2025타경374)

의뢰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사법보좌관
최현중

감정서번호: 광장251-1105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광장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김 병 략

감정평가액	사천삼백사십만사천원정(₩43,404,000.-)					
의뢰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사법보좌관 최현중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종혁 (2025타경374)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11.14	2025.11.06 ~ 2025.11.14	2025.11.14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1,630	토지	1,630	-	43,404,000
			이	하	여	백
	합계					₩43,404,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건 기호 1)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쌍암동 소재 “월영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기호 2)는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소재 “남계동마을” 내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대상물건 개요(의뢰목록)

[개별공시지가 : 2025년]

토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이용 상황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원/㎡)	비고
1	정읍시 쌍암동 1019	답	1,144	보전 관리	답	사다리 완경사	11,600	
2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384-2	답	486	1종 일주	답	사다리 평지	21,000	

3. 기준가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에 의거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치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4.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11월 14일입니다.

5. 감정평가의 근거 및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에 의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방식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①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 ②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
- ③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
- ④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

다. 토지의 평가방법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4조에 의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되, 타 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과 시장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6. 감정평가조건 및 기타사항

- 가. 대상 토지 기호 1) 지상에 자생하는 통상적인 입목은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나. 대상토지 기호 2)는 남동측 일부가 인접지에서 점유 이용중이나 이에 구매 없이 대상토지를 평가하였으며 타인 소유의 건물로 인하여 대상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을 경우의 제약 상태에서 의견가격은 후첨 합니다.
- 다. 대상토지 기호 2) 일부 지상에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소재하고, 기호 2)와 인접 의뢰외 토지 (구석리 383) 양 지상에 제시외 비닐하우스가 소재합니다.
- 라. 대상 물건의 정확한 위치 및 경계, 면적, 현황 등은 별도의 지적측량 등을 요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토지 감정평가액의 산출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인근지역내의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하고, 위치, 부근지대상황 및 성숙도, 접근성, 획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도로 및 교통상황, 공법상제한상태, 일반수요와 유용성 등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한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공시기준일: 2025. 01. 01)

대상 토지	표준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1	A	정읍시 쌍암동 1016	답	383	전	보전 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11,100
2	B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382-1	전	426	전	1종 일주	맹지	사다리 평지	18,800

1) 비교표준지공시지가 연도별 추이

(단위: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표준지 A	10,500	11,500	10,900	11,000
표준지 B	18,500	20,000	18,800	18,7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한 지가변동율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였으며, 해당월의 지가변동율이 미고시되었을 경우에는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율을 연장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계산식
보전관리	-0.04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5.01.01~25.11.14) 2025.01.01~2025.09.30:0.021 2025.09.01~2025.09.30:-0.042 $(1+0.00021) \times (1-0.00042 \times 45/30)$ ≈ 0.99958
주거지역	0.31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5.01.01~25.11.14) 2025.01.01~2025.09.30:0.285 2025.09.01~2025.09.30:0.021 $(1+0.00285) \times (1+0.00021 \times 45/30)$ ≈ 1.00317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은 유사합니다.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 농경지대(대상토지 기호 1)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농로의 상태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출하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토양, 토질의 양부
		일조, 통풍 등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등	고저 (경사지 등)
		경사의 방향
	경작의 장애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토양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주택지대(대상토지 기호 2)

조 건	항 목	세 부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구조 및 상태	폭, 보도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인근 상가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교통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대중교통의 유형과 노선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등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접면 너비 및 깊이
		형상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토양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기호	비교 표준지	개별요인 비교내용						비교치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	A	1.00	1.00	1.00	0.80	1.00	1.00	0.800
		대상토지는 비교 표준지 대비 획지의 상황 등에서 열세합니다.						
2	B	1.20	1.00	1.00	1.00	1.00	1.00	1.200
		대상토지는 비교 표준지 대비 가로구조의 상태 등에서 우세합니다.						

마. 그 밖의 요인의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5.2.5], 국토교통부 및 대법원판례 등에서 인정되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 사례, 거래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하고자 합니다.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가액 : 사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액 : 표준지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인근 감정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

가) 감정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부동산 - KAIS)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비고
#1	정읍시 쌍암동 *****	답	보전관리	19,000	2025-05-21	담보
#2	정읍시 쌍암동 *****	전	보전관리	22,302	2024-04-16	거래사례
#3	정읍시 쌍암동 ****	답	보전관리	14,000	2020-08-21	담보
#4	정읍시 쌍암동 ****	임야	보전관리	21,450	2025-04-17	거래사례
#5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	대	1종일주	63,000	2021-06-02	법원경매
#6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	전	1종일주	55,079	2023-08-28	거래사례
#7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	대	1종일주	79,300	2022-12-19	기타
#8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	전	1종일주	54,263	2024-11-20	거래사례

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

지리적 위치	용도	가 격 수 준
평가대상 기호 1)인근	농경지	약 @15,000원/㎡ ~ @45,000원/㎡ 내외수준.
평가대상 기호2)인근	주거나지	약 @40,000원/㎡ ~ @120,000원/㎡ 내외수준.

※ 도로상태 및 접근성, 형상, 환경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3) 비교사례 선정

대상 토지 인근지역에 소재하며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 공시지가 표준지와 비교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되는 기호 #1, #5)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그 밖의 요인 보정률의 결정

가) 기준시점 현재 기준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현재가격 (원/㎡)	비고
A	11,100	0.99958	11,095	
B	18,800	1.00317	18,860	

나) 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가격의 결정

(1) 사례의 지가변동률

비교사례 기호	용도지역	기 간	시점수정
#1	보전관리	2025-05-21 ~ 2025-11-14	0.99881
#5	주거지역	2021-06-02 ~ 2025-11-14	1.04375

(2)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비교 표준지는 비교사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합니다.	1.000

(3) 비교사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

표준지 기호	사례 기호	개별요인 비교내용						개별요인 비교치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A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표준지는 사례 대비 제반 개별적 가격형성요인 유사합니다.						
B	#5	0.80	1.00	0.95	0.90	1.00	1.00	0.684
		표준지는 사례 대비 도로의 가로의 구조 및 상태와 인근환경, 획지의 상황 등에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가격

표준지 기호	사례 기호	사례가격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A	#1	19,000	0.99881	1.000	1.000	18,977
B	#5	63,000	1.04375	1.000	0.684	44,977

다) 그 밖의 요인의 산정

표준지 기호	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가격(①)	기준시점 현재 비교표준지 가격(②)	가격격차 (①/②)	그 밖의 요인 결정
A	18,977	11,095	1.710	1.710
B	44,977	18,860	2.384	2.380

상기의 산정된 기준시점 당시의 비교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사례를 기준한 가격의 격차와 인근지역 내 유사토지의 지가수준과 평가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상향보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

산식 = 표준지 공시지가(원/㎡)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 밖의 요인

기호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기호	단가(원/㎡)						
1	A	11,100	0.99958	1.000	0.800	1.710	15,178	15,000
2	B	18,800	1.00317	1.000	1.200	2.380	53,863	54,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가. 거래사례 선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에 소재하며 용도지역, 물적 유사성, 가치형성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되는 기호 #2, #6)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 II-1.-마.-2)-가)항 참조 바랍니다.

나. 사정보정

본 비교사례 #2, #6)은 인근지역 토지와 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아니하였습니다.(1.000)

다. 시점수정

비교 사례 기호	용도지역	기 간	시점수정
#2	보전관리	2024-04-16 ~ 2025-11-14	1.00012
#6	주거지역	2023-08-28 ~ 2025-11-14	1.00631

라. 지역요인의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대상 토지는 비교사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합니다.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사례와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

대상 토지 기호	비교 사례 기호	개별요인 비교내용						개별요인 비교치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	#2	1.00	1.00	0.85	0.80	1.00	1.00	0.680
		대상 토지는 사례 대비 인근환경과 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합니다.						
2	#6	1.00	1.00	0.95	1.00	1.00	1.00	0.950
		대상 토지는 사례 대비 인근환경 등에서 열세합니다.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

$$\text{산식} = \text{거래사례 단가(원/㎡)}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

기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치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기호	단가(원/㎡)						
1	#2	22,302	1.000	1.00012	1.000	0.680	15,167	15,000
2	#6	55,079	1.000	1.00631	1.000	0.950	52,655	53,000

3.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대상 토지 기호	각 방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토지단가 결정 (원/㎡)	비고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1	15,000	15,000	15,000	
2	54,000	53,000	54,000	

-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평가액은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며 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대상토지 기호 2)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타인 소유의 건물로 인하여 대상 토지가 소유권행사 등을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단가 아래와 같이 사료됩니다.

대상 토지 기호	면적	토지단가 (원/㎡)	합계	비고
2	486	-	24,948,000	토지소유권 제한금액

III . 감정평가액의 결정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쌍암동	1019	답	보전관리지역	1,144	1,144	15,000	17,160,000	
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384-2	답	제1종 일반주거지역	486	486	54,000	26,244,000	
합 계								₩43,404,0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통상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3) 형태 및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 1)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쌍암동 소재 "월영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시외곽 농촌지역입니다.
- 기호 2)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소재 "남계동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읍소재지 주변으로 단독주택과 미개발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 기호 1)은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근거리에 간선도로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기호 2)는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등이 위치하여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장기간 휴경상태의 임야화 된 '묵답'입니다.
- 기호 2)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은 지적 및 현황상 맹지입니다.
- 기호 2)는 남서측으로 소폭의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토지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통상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3) 형태 및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2)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대상토지 기호 2) 일부 지상에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소재하고, 기호 2)와 인접의뢰외 토지(구석리 383) 양 지상에 제시외 비닐하우스가 소재합니다.
- 별첨 지번약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대상토지 기호 2)와 인접의뢰외 토지(구석리 384-1) 양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모** 소유의 건물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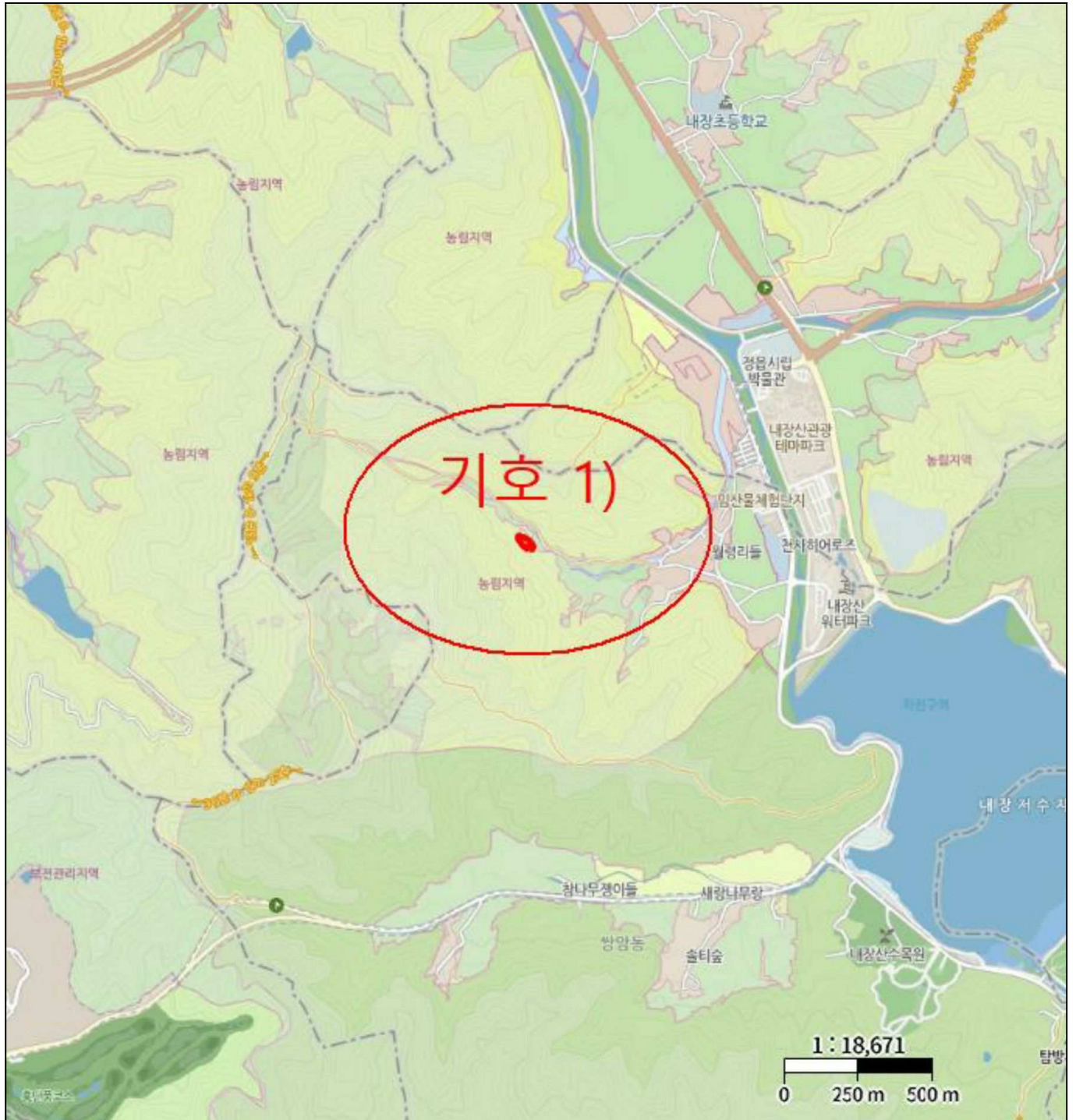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

광역위치도(기호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쌍암동 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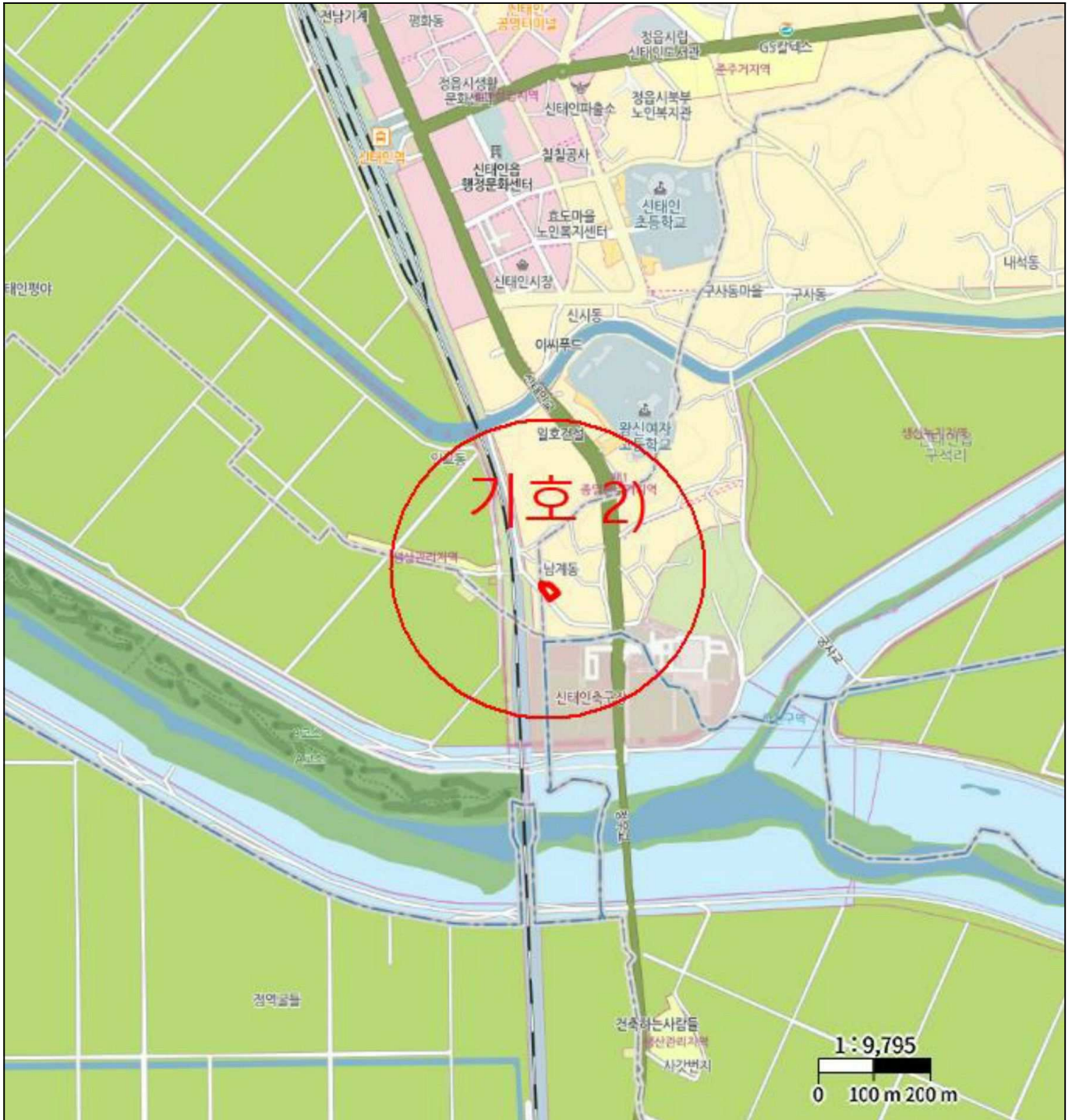


광역위치도(기호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3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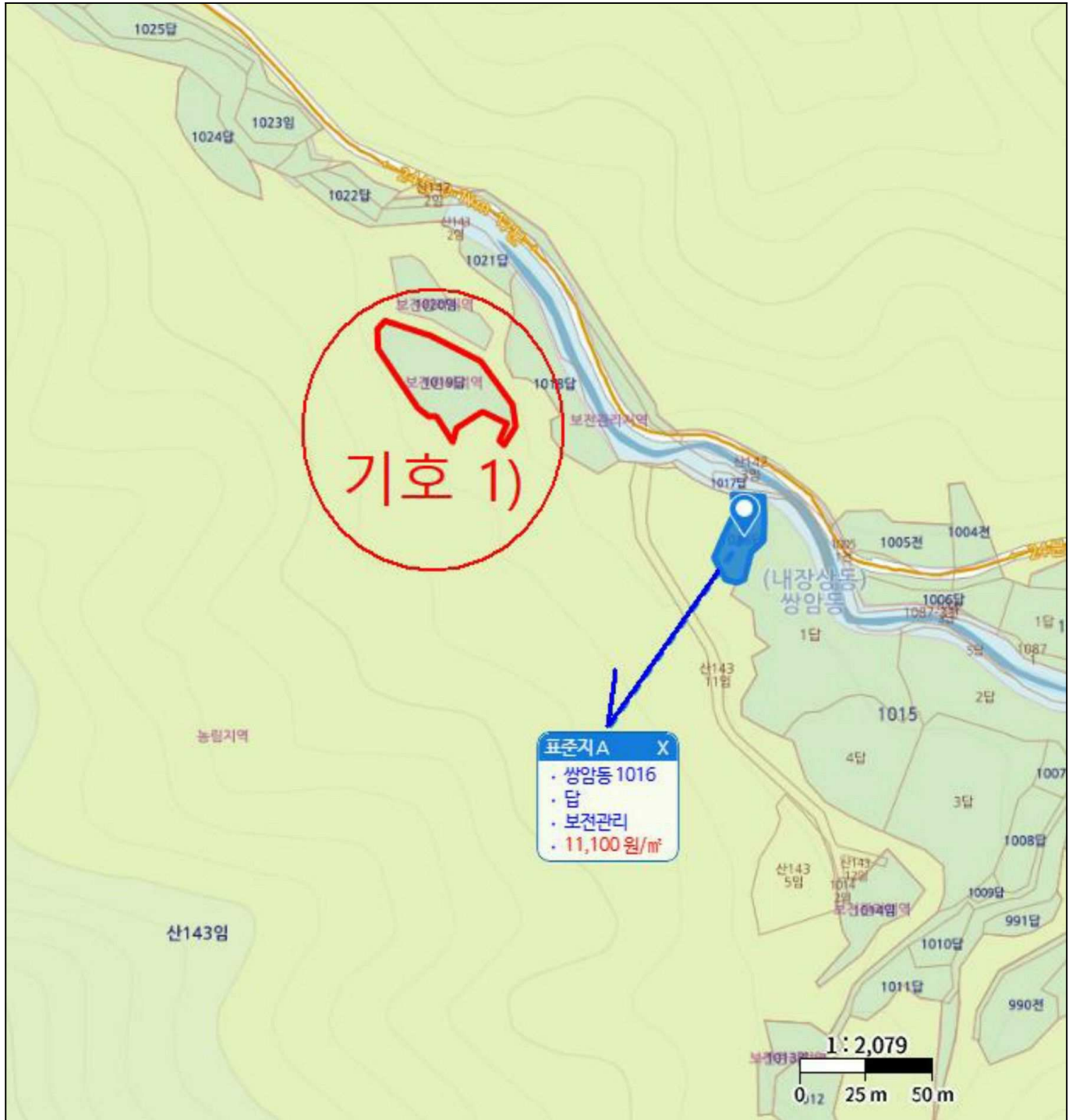


위치도(기호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경주시 쌍암동 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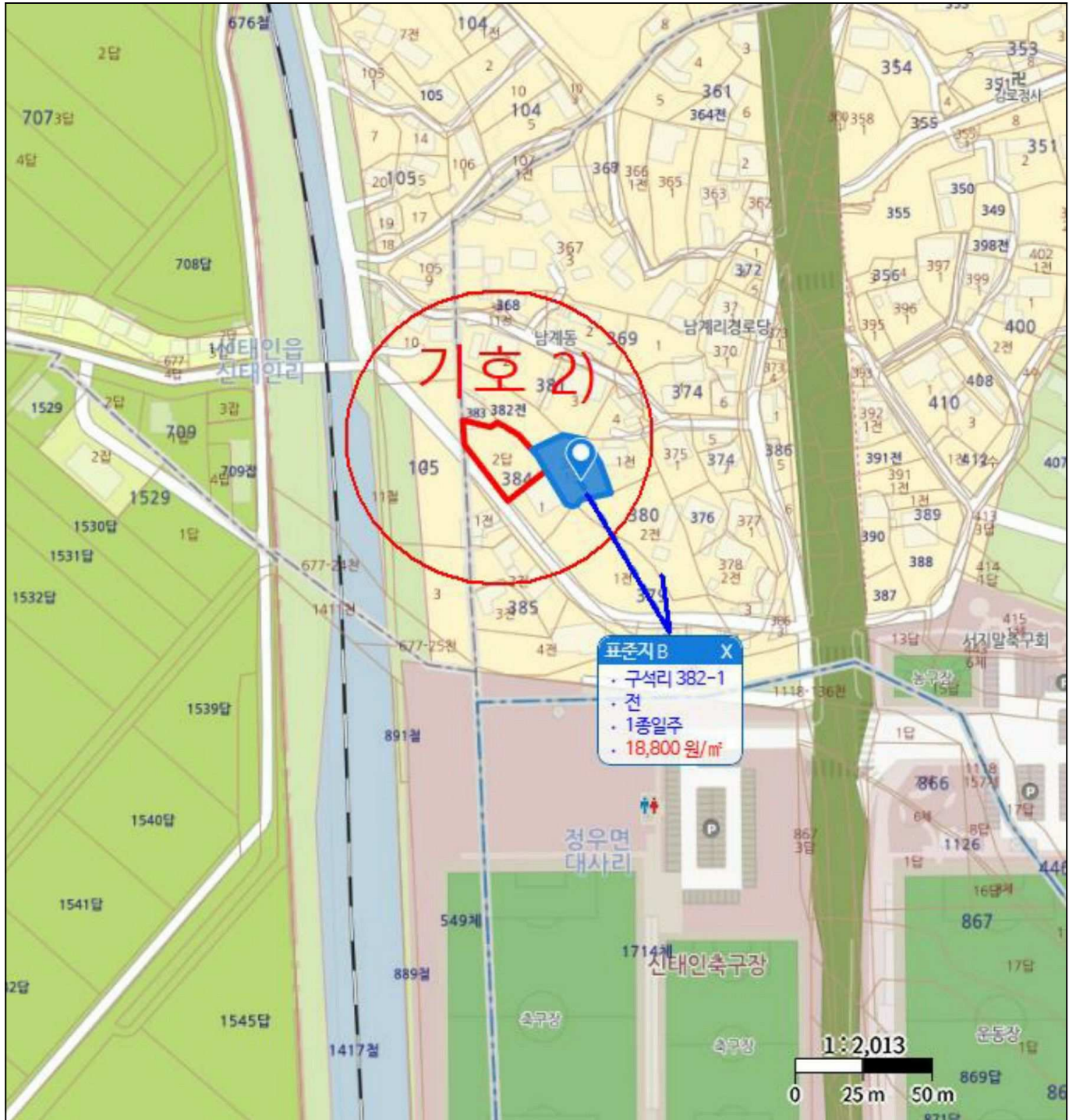


위 치 도(기호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경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384-2



지 번 약 도(기호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경읍시 쌍암동 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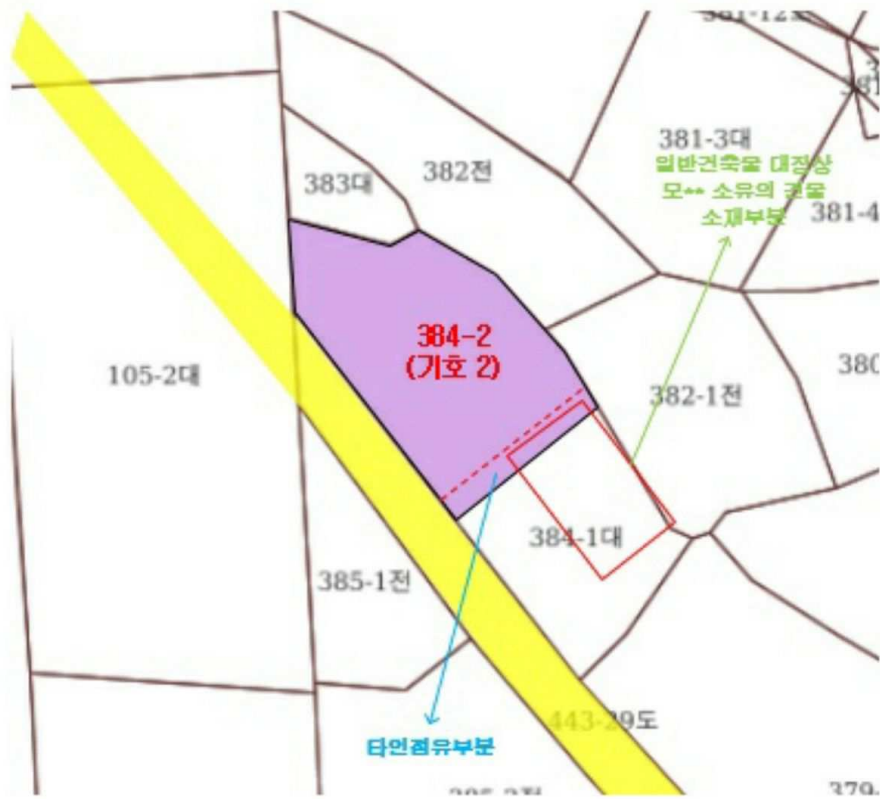


범	례	평가대상토지	도시지역구분선	평가건물 3층이상
				평가계외 건물
				계시외 건물

지 번 약 도(기호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384-2



범	례	평가대상토지	중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3층이상
		도로 선	평가건물 1층	평가 제외 건물
		도시 계획 선	평가건물 2층	제시 외 건물



(1)



(1)



(2)



((2))



(2)
()



(2)
()